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0
----------	-----

2025. 10. 1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9. 30. 김형대 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형대 의원)

- 폐렴은 고령층 주요 사망원인으로, 예방을 위해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백신 모두 필요하나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23가 백신만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 항목에 추가함(안 제5조)
- 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개정 취지 및 배경

○ 국가의 고령화사회 보건정책

- 2013년 5월부터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국민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23가 다당백신, PPSV23)을 생애 1회 무료로 지원함.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 2021년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노인층 질병발생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투입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게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사회 보건정책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연령별·성별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 그러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층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폐렴구균 특성

- 폐렴구균은 치명률이 높은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임. 성인에게는 폐렴 발병이 가장 흔한 양상이고, 소아에게는 균혈증·결막염·중이염·부비동염·폐렴 등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남.¹⁾
- 2023년 통계청은 팬데믹 이후에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안내 자료.

를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 사망원인 질병 3위가 폐렴임을 확인함.

-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증이 발병하는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남구 노인 인구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현황

- 2025년 9월말 기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총 인구 수는 55만 6,324명이고, 그 중 65세 이상 주민은 9만 4,178명임. (강남구민의 약 16.9%를 차지함)
- 다만,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23가 다당백신(PPSV23)을 이미 생애 1회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서, 구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나. 검토 내용

○ 폐렴구균 예방접종 추가 지원

- 현행 제5조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감염병의 명칭을 각 호에 열거하고 있음.
- 해당 조례에 안 제5조제3호를 신설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감염병의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질합’ 이라고 기재한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며, 이를 ‘폐렴구균 감염증’ 으로 정정하여야 함.²⁾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1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행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거. (생략)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 퍼. (생략)	

2) 질병관리청 <2025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 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_____ _____ _____ _____.	제5조(지원대상) _____ _____ _____ 각v호의 _____ 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폐렴구균 <u>단백결합</u>	3. <u>폐렴구균 감염증</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 띄어쓰기 정비

○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

- 현행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 해당 조례에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예방접종의 종류를 ‘폐렴구균 단백질결합’ 이라고 기재한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며, 이를 ‘폐렴구균 단백질결합’ 으로 정정하여야 함.3)

< 규정 비교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_____ _____ _____ _____.	제6조(지원내용) _____ 각v호의 _____ _____ _____.
1. 인플루엔자: (이하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대상포진: (이하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폐렴구균 단백질결합: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3. _____ 단백질결합: _____ _____ 평생v1회에 _____.

3)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043-719-7138)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u>대상포진 예방접종</u>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p> <p>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p> <p><신 설></p> <p>③ (생략)</p>	<p>가. 65세 이상 구민 중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이면서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u>대상포진 예방접종</u>과 <u>폐렴구균 예방접종</u>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p> <p>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p> <p>3. <u>폐렴구균 단백질결합: 폐렴구균 단백질결합</u>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p> <p>③ (생략)</p>	<p>가.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중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구민</p> <p>나.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p> <p>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p> <p>3. <u>폐렴구균 단백질결합</u>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p> <p>③ (생략)</p>
--	---	--

※ 띄어쓰기 정비

- 현행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는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열거되었는데, 굳이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앞의 각 호와 다른 형식으로 중복된 표현을 추가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간결성을 해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강남구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개요

- 이번에 신규로 제안된 강남구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에게 단백질결합백신 예방접종⁴⁾을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임.

4) 예방접종은 의료비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금액정보를 공개하고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 1인당 1회 접종비 (2026년 예산안 기준) $\boxed{100,000\text{원}} = \boxed{80,390\text{원}} + \boxed{19,610\text{원}^5)}$
접종장소	강남구 내 위탁의료기관 (2025년 기준 60개소) 강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준비물	신분증, 필요시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임.

다. 종합 의견

○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항목 및 지원대상 확대

- 이미 국가에서 고령층 발병율이 높은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65세 노인에게 평생 1회 다당백신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사업의 지원항목과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재정 여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조사되었음.⁶⁾

○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결과 및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활동범위가 제한되고 면역에 취약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다당백신과 단백결합백신은 접종력에 따라 최소간격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음.
- 소관부서인 질병관리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절차에 따라 보건복

5)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보에 공고하는 금액: 2025년 3월 기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1회당 일반백신 시행비는 변동없음.

6)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현행 재정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

지부 협의를 이행하는 한편, ①중증장애인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②단백결합백신과 다당백신 접종 순서 및 간격에 관한 정보 안내 및 관리 방안, ③예방접종을 어려워하는 중증장애인과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예방접종 관련 상담 및 안내 방안 등을 검토한다면 사업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됨.

※ 관계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7호]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 6.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18. (생략)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09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붙임 1]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비용추계서 (2025. 9. 기준)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방접종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무료 예방접종(신규): 폐렴구균 단백질결합 예방접종

나. 대상규모 및 비용

- 구민 중 무료 예방접종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심한 장애인(1~3급)
- 지원내용: 1회 무료 접종(기 접종자 제외)
- 전제내용
 - 시행 첫해인 '26년은 대상 인구의 80%, '27년부터는 신규 진입자(약 90명) 및 기존접종자의 10%씩 증가를 전제로 함.
 - '26년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심한 장애인 1,206명 중 80%인 965명을 대상으로 함
 - '27년도부터 65세 도래자 약 90명의 80%(72명) +기존대상자 중 미접종자의 10%(96명)를 접종하는 것으로 추계
- ※ 산출
 - 65세 신규 진입 인원 : 매년 약 70명('26년 약 90명 기준) 예상
 - 기존 대상자의 미접종자 10%(미접종자 전제)를 매년 접종 대상에 추가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1차년도 소요예산(안): 96,500천원

나. 산출기초 (단위: 명,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접종인원(명)	965	170	130	100	100	1,465
소요예산(천원)	96,500	17,000	13,000	10,000	10,000	146,500

- 접종비: 100,000원
 - ┌ 백신비: 80,000원(폐렴구균 단백질결합 백신 의료기관 공급 평균가)
 - └ 시행비: 20,000원(「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예방접종비용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름)

4.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5. 작성자 : 질병관리과 이슬비(02-3423-7268)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 관리 현황 (2025. 9. 기준)

순번	지자체 명칭	조례 제명	조문 내용	해당지원사항 신설일자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p>제2조(접종종류)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p>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이하“접종”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4.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접종종류에 따른 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p>	2025.02.28.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p>제4조(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폐렴구균 단백결합: 평생 1회 <p>제8조(폐렴구균 단백결합 지원대상) 폐렴구균 단백결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 중 65세인 구민으로 한다. 단,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국가예방접종 이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구민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025.06.25.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p>제9조의2(임시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세 이상)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50세 이상)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50세 이상) <p>② 제1항에 따른 무료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2024.07.10.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14.)

- 질 의 : 이번 조례 개정으로 65세 이상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해 지고 1차 연도 소요 예산액이 약 1억원 정도임. 예산 반영이 가능한 것인가
- 답 변 : 조례 개정 전이나 예산부서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 예정임을 협의함. 최종 편성 합의는 아니지만 적극 협의 예정임.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연내 협의 완료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음

7. 토론 요지

- 입법 형식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정하고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